

건설공사의 근로시간 적용 특례 업무처리 지침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주40시간제 적용은 지난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지난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하도급업체가 혼재하고 있어 주40시간제의 효과적인 적용 및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해 적용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특례(법 부칙 제5조의2, 영 부칙 제2조)’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 및 문답풀이를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령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편집자 주]

1. 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 특례 (법 부칙 제5의2)

□ 개정배경

- 주40시간제의 적용여부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건설공사에는 서로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도 소속사업체 규모에 따라 주40시간과 주44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혼재하고 있어,
 - 주40시간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 불안 요인도 상존

- 이에 따라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의 특례규정을 도입하고, 그 산정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 개정내용

-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 단위로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특례 마련(법 부칙 제5조의2 신설)
 -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면 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적용
 - ※ 관련공사 :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

◎ 개정법 부칙 제5조의2의 규정 :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됨을 유의

- ① 주당근로시간(제50조) : 40시간으로 적용
- ② 연장근로수당(제56조) :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
- ③ 3월단위탄력적근로(제51조) :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제한(주 44시간제에서는 56시간)
- ④ 선택적근로시간제(제52조) : 정산기간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 40시간

※ 참고 : 기타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에 대한 규정은 건설업체의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됨을 유의하기 바람

-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 시행령에서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text{상시근로자 수} = \frac{\text{총 공사계약금액} \times \text{해당연도 노무비율}}{\text{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text{조업월수}}$$

□ 시행지침

- 1) 관련공사 단위로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법 부칙 제5조의2)
 - 하나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공사계약금액을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 2008.7.1부터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면 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적용
 - 즉, 하나의 관련공사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그 관련공사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주 40시간) 적용

《예시》 관련공사 “A(B)”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15명)인 공사현장에 원청업체 “갑(상시 25명)”, 하청업체 “을(상시 10명)”이 함께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갑사와 을사” 소속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적용받는 근로시간은?

< 08.7.1일자 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례 1

건설업체 규모	근로시간 적용기준	관련공사 근로시간 적용기준	
		A공사(20명)	B공사(15명)
원청 갑(25명)	주40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하청 을(10명)	주44시간	주 40시간	주 44시간

※원청업체 “갑사”는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에 해당되어, 관련공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적용되고, 하청업체 “을사”는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0이 미만에 해당되어 관련공사의 규모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결정됨

< 08.7.1일자 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례 2

건설업체 규모	근로시간 적용기준	관련공사 근로시간 적용기준	
		A공사(20명)	B공사(15명)
원청 갑(25명)	주40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하청 을(10명)	주44시간	주 44시간	주 44시간

※원청업체 “갑사 및 을사”는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각각 주 40시간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판단됨. 즉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원청 “갑사”의 근로자는 주40시간, 하청 “을사”의 근로자는 주44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됨

2) 개정법 부칙 제5조의2에서 “관련공사”의 의미

- 관련공사란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를 말함
 - 즉, 하나의 최종목적물(건물, 아파트 등)의 완성을 위하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

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함

3)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영 부칙 제2조)

- ‘관련공사’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산정

$$\text{상시근로자 수} = \frac{\text{총 공사계약금액} \times \text{해당연도 노무비율}}{\text{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text{조업월수}}$$

※ '08년도 일반노무비율 28%, '08년 건설업 월평균 임금 2,496,330원

※ 상기 산정방식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당해연도 수치를 사용하도록 일부 변경하여 적용

4)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 “요소별 개념” 설명

가. “총 공사계약금액”의 의미(법 부칙 제5조의2, 영 부칙 제2조)

- 건설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말함
 - 즉,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관련공사의 계약상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함
 - ※ ‘총 공사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며, 발주자의 예정가격(발주금액)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 만약, 총 공사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

의 명칭과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관련공사를 2 이상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도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 「건설공사 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말함

- 주 40시간을 기왕에 적용받고 있던 관련공사에서 총 공사계약금액 또는 공사기간 등의 변경으로 관련공사의 규모가 축소되어 주 40시간 적용 미만의 규모(20명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 법 적용의 안정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주 40시간을 계속하여 적용함
 - 〈예시〉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25명인 공사(주 40시간 적용)에서 총 공사계약금액과 조업월수 변경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5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주40시간 적용
 - 반면, 발주시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이 법적용 기준에 미달되었으나, 그 이후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변경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시점부터 적용됨

나. “해당연도 노무비율”의 의미(영 부칙 제2조)

- ‘해당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함
 -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보험료 징수를 위해 매년 말 다음 연도의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함
 - ※ '08년도 일반 노무비율 : 총 공사금액의 28%

다.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의미(영 부칙 제2조)

-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노동부)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함
 - ‘당해연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보험료 징수를 위해 매년 말 다음 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함
 - ※ '08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2,496,330원

라. “조업월수”의 의미(영 부칙 제2조)

- ‘조업월수’란 관련공사의 계약서상 공사기간을 말함
 - 다만, 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기간을 의미함
- 또한, 조업월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 〈예시〉 공사기간이 '08.7.1부터 '08.11.16까지인 경우에 조업월수는 4.5개월(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에 해당됨
- ‘조업월수’는 총 공사금액과 함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임

5) “상시근로자 수(20인)의 산정방법” 산정례 예시

-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 노무비율, 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를 기초하여 산정함
 - 즉 관련 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노무비율과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연도 중에는 변동사항 없으므로,
 - 상시근로자 수는 총 공사계약금액과 조업월수에 따라 결정됨

【상시근로자 수 산정례】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08년) 28%,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인 경우, 조업월수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가 20인에 해당되는 총 공사계약금액

〈예시1〉 조업월수가 12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 × 조업월수(12월)
 ⇒ 총 공사계약금액 = 2,139,711,429원
 ※ 소수점 이하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

〈예시2〉 조업월수가 6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 × 조업월수(6월)
 ⇒ 총 공사계약금액 = 1,069,655,714원

〈예시3〉 조업월수가 24월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20) = 총 공사계약금액(?) × 건설업 일반노무비율(28%) /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 × 조업월수(24월)
 ⇒ 총 공사계약금액 = 4,279,422,857원

□ 개정법률(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부칙 〈신설〉	부칙 제5조의2(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부칙 제4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현행	개정
	공사의 발주자가 갖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다만, 부칙 제4조 각 호에 따라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개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부칙 〈신설〉	제2조(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①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에 따른 관련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한다. 상시 근로자수 = $\frac{\text{총 공사 계약금액} \times \text{해당 연도 노무비율}}{\text{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 \times \text{조업월수}}$ 이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현행	개정
	<p>말하고, “해당 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하며,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p> <p>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총 공사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이나 그 밖의 명칭과 상관 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p>

□ 시행시기 : 2008. 7. 1

- '08.7.1일자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련공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

《예시》 원청업체(상시 30명) “갑”은 발주자와 총 공사계약금액 2,140백만원(상시 20명)의 관련공사에 대하여 계약(A)을 체결하고

하청업체(상시 10명) “을”과 위 관련공사의 일부(5억원 상당)에 대한 하도급계약 (B)를 체결한 경우 “을사” 소속의 근로자가 관련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 하도급계약(B)의 계약체결 시점과 상관없이

- 관련공사 계약(A)체결 시점이 '08.6.30인 경우 : 주 44시간 적용
- 관련공사 계약(A)체결 시점이 '08.7.1인 경우 : 주 40시간 적용

□ 기대효과

- 동일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당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건설현장에 주 40시간 근로시간 정착 유도
 - ※ 현행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방식을 유지하면서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특례를 설정한 것이므로 법 적용상 혼선은 없음
- 공사계약 단계부터 주40시간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계약단계부터 공사기간, 인건비 등을 적정하게 반영토록 함



재미있는 건교상식

공항 C.I.Q 지역이란?

최근 기업인의 공항귀빈실 이용과 관련해 C.I.Q.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럼 공항 C.I.Q. 지역이란 무엇인가?

C.I.Q.란 Custom(세관), Immigration(출입국), Quarantine(검역)의 약자입니다. 공항이나 항만 등을 통해 출입국할 때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열을 세분화한 것을 뜻합니다.

모든 국제공항과 항만에는 이러한 C.I.Q. 지역이 있으며 이곳에서 행해지는 사열 업무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위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출입국 사열(Immigration)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출국허가서인 여권입니다.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는 선원수첩이나 여행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세관신고(Custom)시에는 휴대물품 반출신고서와 재반출 조건 일시반입물품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 이상의 화폐 소지, 반출입이 금지된 물품의 소지, 과세 대상품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받게 됩니다.

검역(Quarantine)은 주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크게 식물검역과 동물검역으로 나뉩니다.

II. 개정법령 관련 문답풀이

1. 건설현장의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이유 및 개정방향은?

- 건설공사는 여러 가지 특성상 주40시간제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06년 포항건설플랜트 노조 파업과 같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동일한 현장에 주40시간 적용 사업체의 근로자와 주44시간 적용 사업체 근로자가 혼재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근로시간 감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출이 잦아 공사참여 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이 어려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단위로 주당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 총 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면('08.7.1 이후 계약체결 공사부터 적용)
 - 그 건설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속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주 40시간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총 공사계약금액을 바탕으로 건설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란 ?

-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에 당해연도의 노무비율을 곱해서 그 건설공사에 투입된 인건비를 산정하고
 - 그 금액(인건비)을 건설근로자 월평균 급여로 나누어서 거기에 투입된 총인원을 산출하는 방식임
- 이 방식은 현재 보험료징수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

식을 사용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

〈산정식 및 산정사례 예시〉

◎ 산정식 : 산정방식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변형

• 상시근로자 수 =

(총 공사계약금액 × 당해년도 노무비율) ÷

(당해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건설업월평균임금, 노무비율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

① 산정례1: '08년 건설업 일반노무비율 28%,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원, 조업월수 12월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20명에 해당되는 총 공사계약금액 산정례

⇒ 총 공사계약금액 = 2,496,330원 × 12월 × 20명 ÷ 0.28 = 2,139,711,429원

② 산정례2 : 〈산정례1〉에서 조업월수가 6월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20명에 해당되는 총 공사계약금액 산정례

⇒ 총 공사계약금액 = 2,496,330원 × 6월 × 20명 ÷ 0.28 = 1,069,655,714원

③ 산정례3 : 〈산정례1〉에서 조업월수가 24월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20명에 해당되는 총 공사계약금액 산정례

⇒ 총 공사계약금액 = 2,496,330원 × 24월 × 20명 ÷ 0.28 = 4,279,422,857원

3.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 발주되는 공사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총 공사계약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 건설공사는 발주시기나 발주형태에 따라 여러개의 공사로 나누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임
 - 개정법에서는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장소·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공사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총 공사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고 있으며,
 - 만약, 총 공사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이나 그 밖의 명칭과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를 둘 이상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함

4. 건설업의 법 적용방식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공사에 대하여만 적용방식 특례가 도입되는지?

- 개정법에서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주40시간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현행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만 근로시간 적용에 있어 특례 제도가 도입됨
- 즉, 건설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한하여, 그 기간 동안은 공사규모에 따라 주당근로시간을 판단하도록 한 것임
 - 다만, 기왕에 주40시간을 적용받는 건설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사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동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사례〉 총 공사계약금액이 30억원인 공사(A)와 15억원인 공사(B)의 경우

※ 상시 20명 공사금액(1년 기준) ; 2,139,711,429원

① 30억원 건설공사(A)에 주40시간제 적용 건설업체의 근로자와 주44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혼재되어 경우
⇒ “A”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주 40시간 적용

② 15억원 건설공사(B)에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건설업체의 근로자와 주44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 “B” 공사현장의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적용해야 하지만 기왕에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주 40시간이 적용됨

5. 건설공사에 대하여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 첫째, 건설업 및 건설현장에 주40시간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됨
 - 즉, 건설규모에 따라 주40시간 적용여부가 명확해짐으로써 노사간 다툼도 해소하고 근로시간 관련 근로감독도 용이해짐
- 둘째, 건설업의 지나친 저가 하도급 관행 개선에도 기여하게 됨
 - 즉, 건설공사 발주자와 원수급업체간 또는 원수급업체와 하수급업체간 계약시에 적정한 공사기간 및 인건비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짐
- 셋째, 영세하도급 업체에 비용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시에 주40시간을 토대로 인건비를 산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하도급 업

체가 사전에 추가로 필요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참고 〉 근로기준법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영세건설업체의 수

○ 2008년 7.1 이후에는 주40시간제가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므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5인 이상 20인 미만의 건설업체 약 32,169개소(근로자 285천명) 추정

*자료 : 사업체노동실태현황(노동부, 2006년기준)

6. 상시 20인 미만의 건설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미치는 효과는?

- 상시 5인이상 20인미만의 건설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미치는 효과는
 -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적용받게 되고 이와 연관된 연장근로 할증임금도 받게 됨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조항〉

- ① 주당근로시간(제50조) : 40시간으로 적용
- ② 연장근로수당(제56조) :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
- ③ 3월단위탄력적근로(제51조) : 특정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제한(주 44시간제에서는 56시간)
- ④ 선택적근로시간제(제52조) : 정산기간의 주당근로시간 평균 40시간

○ 4인 이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이 법에 의한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할증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음
 ※ 현행법 제11조 제1항에서 이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 및 대통령령에 의해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은 따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의 4인이하 사업장 적용조항에 제56조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할증임금 등 금전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음

7. 동일한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공사현장이 달라짐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달리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법리적 문제는 없는지?

- 개정법령에 의하면 주44시간제를 적용받는 건설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주40시간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소속 건설업체의 다른 근로자와의 근로시간 적용에 있어 차등이 발생하는 바
 - 이와 관련해서는 법제처심사 및 자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① 서로 다른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금액은 당해 사용자로서 책임질 수 없는 외생적인 조건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할 수 없음
 - ② 이미 파견법에서도 동일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사용자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정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음
 - ③ 결과적으로 법정 근로조건외의 차등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는 근로조건외의 개선 및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정책적인 결단의 범위 안에 있음

8. 금번 법령개정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시간 감축측면에서 나아진 점이 있는지?

- 금번 법령개정 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에 따르면 그 현장에 참여하는 업체별로
 - ① 본사인원 ② 당해현장인원 ③ 다른 현장의 인원 등을 모두 조사한 후 그 인원을 합하여 각 업체별로 주40시간 적용 여부를 판단함
- 개정법령에 따르면 각 업체별 근로자 수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따라 주40시간 적용 여부를 곧바로 판단할 수 있음
 - ※ 다만,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주44시간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근로자가 자신이 20인 이상 사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할 경우는 개정전의 방식대로 그 근로자 소속업체의 근로자 수를 일일이 합산하여 적용할 근로시간 판단

9. 상시 20인 이상의 건설업체가 15억짜리 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모두를 이 공사에 투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 이 건설업체는 20인 이상의 사업(장)이므로 도급 금액에 관계없이 '08.7.1부터는 당연히 주40시간제의 적용대상임
 -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건설공사 금액에 따라 주44시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가 아님

10. 상시 15인 미만의 건설업체가 30억원짜리(공사기간 1년) 관련공사 중 일부(3억원)를 하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 이 건설업체는 상시 2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08.7.1 이후에도 원칙적으로는 주44시간이 적용됨
- 그러나, 이번 개정법령에 의하면 이 건설공사는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건설공사이므로

- 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공사기간 동안 주40시간을 적용하여 할증임금을 주어야 함

11.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조업월수의 단위기간은

- 총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조업월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하기 바람
- 예컨대, 공사기간이 '08.7.1부터 '08.11.16일까지인 경우에 조업월수는 4.5개월(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이 될 것임

12. 건설업체 갑(10명), 을(10명), 병(5명), 정(5명)에서 관련공사(A)에 각사의 근로자들을 모두(30명) 참여시켜 근무하도록 한 경우로서, 개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15명인 경우, 동 공사현장(A)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 건설업체 “갑사, 을사, 병사, 정사”의 사업(건설업) 규모로 볼 때는 주44시간제가 적용되며,
 - 개정법령에 의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 수도 15명에 해당되어 관련공사(A)에서 근무하는 각사의 근로자에 모두 주 44시간제가 적용됨
- 다만, 개정법령 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에 의하면 관련공사(A)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30명(갑 10명, 을 10명, 병 5명, 정 5명)에 해당되더라도,
 - 이는 개정법령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15명)가 20명에 미달되어 주 40시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동 관련공사(A)에서 근무하는 갑사, 을사, 병사, 정사 소속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 적용됨

13.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기간만 최초 계약당시의 기간과 비교하여 변경(단축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조업월수(공사기간)는?

○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은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여건변화 등

으로 공사기간만 변경된 경우에는,

- 최초 계약당시의 조업월수(공사기간)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과 공사시간'이 함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시점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이 경우, 기왕에 주 40시간을 적용받고 있던 관련공사에서 총 공사계약금액 또는 공사기간 등의 변경으로 관련공사의 규모가 축소되어 주 40시간 적용 미만의 규모(20명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 법 적용의 안정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주 40시간을 계속하여 적용함



철도는 좌측통행일까? 우측통행일까?

우리나라에서 사람은 좌측통행을, 자동차는 우측통행을 합니다. 일본과 일부 영연방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동차는 우측통행을 합니다.

자동차가 보급되기 전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었던 마차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으면서 좌측통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마부들이 오른손잡이인 관계로 오른손으로 채찍질을 할 때 행인과 옆 좌석 사람을 채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또는 중세 시대 때 기사들의 마상 시합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오른손에 창이나 칼을 들고 싸울 때 마주 오는 상대방을 오른편에 놓고 싸우는 것이 공격하기에 편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독일에서 벤츠와 다이믈러가 자동차를 발명하면서 기어 변속 편의를 위해 오른손잡이에게 유리하도록 운전석을 왼쪽에 배치하면서 차량의 우측통행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영연방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자동차는 우측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좌측통행일까요? 아니면 우측통행일까요?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철도는 좌측통행입니다. 그 이유는 일제 때 만들어진 철도들이 일본 시스템을 따라 좌측통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하철은 우측통행입니다. 자동차의 통행 방향과 같은 운행 방향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일반철도인 경부선, 경원선 등과 연결되는 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은 좌측통행입니다. 또한 과거 철도청에서 건설한 분당선(선릉~오리) 과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연결되는 과천·안산선(남태령~오이도)은 전동차만 다니지만 좌측통행입니다.

반대로 서울시 지하철 3호선과 연결되는 일산선(지축~대화)의 경우는 철도청에서 건설했지만 우측통행입니다.

이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지하철 4호선과 과천·안산선과의 연결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지하철 4호선은 우측통행이고, 과천·안산선은 좌측통행입니다. 기차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이 마법 같은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지하 입체교차라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남태령역과 선바위역 사이의 지하에서 파배기처럼 터널이 X자로 교차하게 됩니다.

다음에 혹시 서울대공원이나 경마공원에 놀러갈 기회가 있다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열차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도 굉장히 놀라운 문화와 역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죠.